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5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규제 인식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업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의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협동화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아울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취소요건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의무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정승인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0조)
- 다. 협업기업 선정 지원 및 협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 라. 수출·판로개척, 공동 법인설립 지원 등 협업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수요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정비함(안 제39조)
- 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83조의2)

##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52, Fax : 042-472-328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23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협업”이란 여러 개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협업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이하 이 절에서 “협업기업”이라 한다)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는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협업기업의 지원) 정부는 협업기업이 원활하게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자금
2. 정보제공 및 교류촉진
3. 인력양성
4. 기술개발자금
5. 애로사항 진단 및 자문
6. 수출 및 판로개척
7. 협업 공동법인 설립 등

제40조제1항의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을 “협업기업의 협업추진”으로 한다.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업기업의 협업추진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큐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40조까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br>1. ~ 8. (생략)<br>9. “협업”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 1. ~ 8. (현행과 같음)<br>9. ----- <u>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이 -----</u><br>-----<br>-----<br>10. ~ 11. (현행과 같음)<br>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 -----<br>-----<br>-----<br>-----<br>-----<br>-----<br>-----<br>-----<br>-----<br>-----<br>-----, <u>다만, 제1호에</u> |

|  |  |
|--|--|
|  | <p><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u>제37조(협업지원사업) ①중소기업</u></p> <p>청장은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이하 이 절에서 “협업기업”이라 한다)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u>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③제1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삭 제>

①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을 취소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끝 낼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업사

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

로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협업사업

## 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하여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협업사업의 지원) 정부는  
승인사업자가 원활하게 협업사  
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자금 지원

2. 정보제공

3. 정보화 지원

4. 인력양성 및 지도·연수

5.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39조(협업기업의 지원) ----

협업기업이 ----- 협업을  
-----  
-----.

1. 협업자금

2. 정보제공 및 교류촉진

3. 인력양성

4. 기술개발자금

5. 애로사항 진단 및 자문

6. 수출 및 판로개척

7. 협업 공동법인 설립 등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 -----  
----- 협업기업의 협업  
추진 -----  
-----.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

업 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40조까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
| 연 락 처         | (042) 481 - 4452 |